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동 법률안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통합배경은 가산세 중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기간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 지 전에 적용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와 '가산 금제도'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 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가산금'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시세 부과·징수 업무 소관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